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5
----------	------

제출일자 : 2022. 12.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성서5차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세천1리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과다·과밀 행정리를 구성하고 있어 행정리 분리·신설 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 도모(주민 건의사항)

2. 주요내용

가. 리·반 조정 : 2리 증(326리 ⇨ 328리), 8반 증(2,814반 ⇨ 2,822반)

읍·면	기존			개정			증감		이장 정수	비 고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리	반		
다 사 읍	계	10	1,172 (1,714)		18	1,172 (1,714)	2	8	3	
	세천1리	10	1,172 (1,714)	세천1리	10	298 (551)	-	-	1	
	-	-	-	세천8리	5	523 (706)	1	5	1	
	-	-	-	세천9리	3	351 (457)	1	3	1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2. 10. 31. ~ 11. 20.)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다사읍 세천리란 및 다사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세천리	9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8리
			세천9리
다사읍 소계	11	65	65

별표3 중 다사읍 세천1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세천1리	제 1 반	125~135(131 제외), 952~954, 955-2, 978, 980
		2	135-3, 943~946, 948-1, 949~951
		3	969~972, 955~967, 977-6, 979-1, 979-2
		4	876~891(878 제외), 916-1, 917~933(920, 924, 926, 927 제외), 934-2, 935~938, 940, 941-2 947, 1529-9
		5	892~898(897 제외), 911~912, 914-2
		6	843~847, 899~903, 904-1, 905-1, 906~909
		7	833, 834-1, 835, 836~842(839,840 제외)
		8	848~865(857,862 제외), 866-3
		9	1026~1032
		10	973~976, 913~916(915 제외), 1033~1046
			740~745, 1014, 1022~1023, 1047~1082 (1073, 1075 제외), 1083-1, 1084~1087, 1088-2, 1168~1172(1169 제외), 1542-4, 1544-4, 1582~1585, 1668, 1672~1684(1675 제외)

별표3 중 다사읍 세천7리란 다음에 세천8리란 및 세천9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세천8리	제 1 반	977, 1000, 1002-3, 1003, 1023-3, 1025, 1028-2, 1029-2, 1574~1581
		2	1570~1573
		3	1567~1569
		4	1561~1565
		5	43~45, 152~279 (161,195,199,223,261제외), 685~689, 691~692, 868~875, 1662~1671 (1668 제외), 1554~1560

읍 면	리	반	구 역
	세천9리	제 1 반	92, 1590~1593(1591 제외), 1697~1702
		2	1591, 1594~1604, 1695~1696
		3	1503, 1685~1693, 1605~16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4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4리
	세천리	7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리	9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8리 세천9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부곡리	1	부곡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63	63	다사읍 소계	11	65	65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세천1리	제1반	892~910	다사읍	세천1리	제1반	125~135(131 제외), 952~954, 955-2, 978, 980
		2	918~961			2	135-3, 943~946, 948-1, 949~951
		3	876~93			3	969~972, 955~967, 977-6, 979-1, 979-2
		4	632-3~1093			4	876~891(878 제외), 916-1, 917~933(920, 924, 926, 927 제외), 934-2, 935~938, 940, 941-2 947, 1529-9
		5	1035~1045			5	892~898(897 제외), 911~912, 914-2
		6	1027-2~1069			6	843~847, 899~903, 904-1, 905-1, 906~909
		7	1035~1045			7	833, 834-1, 835, 836~842(839,840 제외), 848~865(857,862 제외), 866-3
		8	1~165			8	1026~1032
		9	165~265			9	973~976, 913~916(915 제외), 1033~1046
		10	266~800			10	740~745, 1014, 1022~1023, 1047~1082 (1073, 1075 제외), 1083-1, 1084~1087, 1088-2, 1168~1172(1169 제외), 1542-4, 1544-4, 1582~1585, 1668,

						1672~1684(1675 제외)
	<신설>				세천8리 제1반	977, 1000, 1002-3, 1003, 1023-3, 1025, 1028-2, 1029-2, 1574~1581
					2	1570~1573
					3	1567~1569
					4	1561~1565
					5	43-45, 152-279(161,195,199,223,261 제외), 685-689, 691-692, 868-875, 1662~1671 (1668 제외), 1554~1560
	<신설>				세천9리 제1반	92, 1590~1593(1591 제외), 1697~1702
					2	1591, 1594~1604, 1695~1696
					3	1503, 1685~1693, 1605~1609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행정리 분리 · 신설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